

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



연번	산업안전보건법	주요 내용	벌칙
1	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	○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(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; 관내 대행기관 연락)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2	제29조(안전·보건교육)	○정기교육 : 생산직(매분기6시간), 사무직(매분기3시간), 관리감독자(연간16시간) ○채용시교육 : 건설업 이외 (8시간이상) ○특별교육 : 건설업 이외 (16시간이상)	5백만원 과태료 (횟수 또는 인원예 따라 차등 부과)
3	제34조(법령요지 게시)	○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4	제37조(안전보건표지의 설치, 부착)	○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·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※ 경고표지(인화성물질 등)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5	제36조(위험성평가)	○건설물, 기계·기구,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,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6	제38조(안전상의 조치)	○기계·기구 기타설비(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), 폭발성, 발화성, 인화성물질, 전기,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※ 세부 내용 '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' 참고	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7	제39조(보건상의 조치)	○분진,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·습도, 방사선, 근골격계 부당작업, 관리대상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※ 세부 내용 '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 참고	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8	제57조 (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)	○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, 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자문서로 제출 (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엔 지체없이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통보) ※ 요양신청서 제출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	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9	제80조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에 대한 방호장치)	○목재가공용 동근톱, 연삭기, 압력용기, 보일러, 교류아크용접기, 정전 및 활선 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등은 방호장치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10	제84조(안전인증)	○크레인, 고소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·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(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)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11	제93조(안전검사)	○리프트,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은 주기적 안전검사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2	제114조(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및 교육)	○화학물질,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, 수입, 사용, 운전, 저장할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○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·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○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13	제119조(석면조사 등)	○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·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14	제125조(작업환경측정)	○분진, 화학물질 및 소음 [80dB이상]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(6월에 1회 이상,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)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5	제129조(건강진단)	○일반건강진단-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○특수건강진단-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16	제164조(서류보존)	○산업재해 발생기록, 안전보건교육, 안전· 보건관리자,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 서류 등 : 3~30년간 보관	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